

의정부지방법원 2023. 3. 23 선고 2022가단759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3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의정부시 E 대 14㎡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3. 3. 5. 접수 제76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